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21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개최로 발생하는 경제적 과급효과가 시설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립체육시설 주변 상권이 다른 상권보다 행정적 특혜를 받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가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 계획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법령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와의 협력·상생 노력을 담아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시행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의2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의2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
전·활용에 관한
사항

4.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시립체육
시설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시장이 스포츠데
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
자: 100분의 30 감

2. 체육시설

3. 체육시설

4. 체육시설

5.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

6. -----체육시
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체육
시설

2. 체육시설

3. 체육시설

4. 체육시설

<삭 제>

5. -----체육시
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체육
시설

액. 다만, 시를 연고
로 하는 프로구단
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4.·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
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
용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장이 스포츠
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
시설 이용자: 10
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
로 하는 프로구
단이 있는 경기

--.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
설 -----

-----.

--.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
설 -----

-----.

장은 제외한다.

바. (생략)

2. ~ 5. (생략)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립체육시설의”를 “체육시설의”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체육시설 관리·운영”으로,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체육시설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립체육시설”을 각각 “체육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② (생략) <u><신설></u></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의2(<u>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 ① 시장은 <u>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이하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p> <p>②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u> 2. <u>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u> 3. <u>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u> 4. <u>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u> 	<p>제3조의2(<u>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 ① ----- <u>체육시설의</u> ----- ----- <u>체육시설 관리·운영</u> ----- --<u>체육시설 종합계획</u> ----- ----- -----.</p> <p>② <u>체육시설</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시설</u>----- ----- 2. <u>체육시설</u>----- -- 3. <u>체육시설</u>----- ----- 4. <u>체육시설</u>----- -----

5.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
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
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4. 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
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
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
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

5. -----체육시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체육시설 -----
-----.
-----.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설 -----
-----.
-----.

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바. (생략)

2. ~ 5. (생략)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체육시설 관리
· 운영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립체육시설의”를 “체육시
설의”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체육시설 관리·운영”으로, “시립체
육시설 종합계획”을 “체육시설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립체육시설”을 각각 “체육시
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생략) <신설></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u>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이하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p> <p>②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u> 2. <u>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u> 3. <u>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u> 4. <u>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u>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 <u>체육시설의</u> ----- ----- ----- <u>체육시설 관리·운영</u> ----- ----- <u>체육시설 종합계획</u> ----- ----- -----.</p> <p>② <u>체육시설</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시설</u>----- 2. <u>체육시설</u>----- 3. <u>체육시설</u>----- ----- 4. <u>체육시설</u>----- ----- 5. ----- <u>체육시설</u>----- -----
<p>제9조(입장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p>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4. 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
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
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
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
장은 제외한다.

바. (생략)

2. ~ 5. (생략)

체육시설 -----
----- . -----
-----.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설 -----
----- . -----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